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839호 2022. 1. 7.(금)</p>	
---	--	---

선 결	기관의 장

공 고

제2022-31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2
제2022-35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4
제2022-3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5
제2022-4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6
제2022-41호 조례 제정과 폐기 청구권자 총수 공표	8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3.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A	거창 강남배수지	거창읍 장팔리 708-1일원	-	증)2,173	2,173	-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수도공급 설비(거창 강남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지 신설 ○ 위치 : 거창읍 장팔리 708-1번지 일원 ○ 면적 : 2,17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읍 강남지역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도공급설비를 신설하고자 함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으로 제출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바랍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21. 12. 28. ~ 2022. 1. 4.까지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2. 1. 7.

거 창 군 수

공고기간 : 2022. 1. 8. ~ 2022. 1. 12.(5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 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거창군공무직지회)	조 용 병	2021. 12. 24.	104명	

기타사항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거창군 행정과(서무담당)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52,456	52,412	44	5,246	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

2022년 1월 7일

거창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거창군수 및 거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수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15/100)	읍·면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계	52,454	7,869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4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거창읍	33,088		525	
주상면	1,471		221	
응양면	1,746		262	
고제면	1,329		200	
북상면	1,459		219	
위천면	1,789		269	
마리면	1,873		281	
남상면	2,211		332	
남하면	1,330		200	
신원면	1,429		215	
가조면	3,443		517	
가북면	1,286		193	

▣ 군의회 의원

선거구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별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합 계		52,454			
가 선거구	거창읍 (상동 제외)	25,335	5,067	5,067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선거구	계	12,874	2,575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거창읍(상동)	7,753		129	
	북상면	1,459		129	
	위천면	1,789		129	
	마리면	1,873		129	
다 선거구	계	5,832	1,167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주상면	1,471		59	
	웅양면	1,746		59	
	고제면	1,329		59	
	가북면	1,286		59	
라 선거구	계	8,413	1,683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상면	2,211		85	
	남하면	1,330		85	
	신월면	1,429		85	
	가조면	3,443		85	

2022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① 2022. 1. 12.까지

(단위 : 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		
52,454	52,412	42	1,050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② 2022. 1. 13.부터

(단위 : 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		
53,047	53,005	42	1,061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2년 1월 7일

거창군수